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1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문금주・문정복・박 정

권칠승 • 박지원 • 서삼석

이용선 • 박희승 • 주철현

복기왕 • 민형배 • 위성곤

박홍근 • 이훈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일부집회에서는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벌어짐.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 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 요성이 있음.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공 공장소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이에 누구든지 광고물에 깃발, 휘장 및 문양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안 제5조).

법률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서는"을 "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깃발, 휘장 및 문양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생 략)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 <u>하</u>	<u>ō</u> }
<u>여서는</u> 아니 된다.	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
	<u> 여서는</u>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깃발, 휘장 및 문양 등 군국</u>
	<u>주의를 상징하는 것</u>
<u>6</u> . (생 략)	<u>7</u> . (현행 제6호와 같음)